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5-053호

우편환법 제9조(요금)에 따른 우편환 요금 고시(제2021-30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환 요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통상 우편요금(등기수수료) 인상*에 따른 우편환 특수취급 증서송달료를 변경하고자 함

* 기존 1통 당 등기수수료 : 2,100원 → 2,400원 (300원↑)

2. 주요 내용

○ 우편환 특수취급 증서송달료 조정

현 행		개 정
보통등기우편 2,530원 익일특급 3,530원	⇒	보통등기우편 2,830원(300원↑) 익일특급 3,830원(300원↑)

3. 의견 제출

「우편환 요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5년 5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

o 전　　화 : 044-200-8485 (Fax: 0505-005-1015)

o E-mail : hidys@korea.kr

o 주　　소 : 세종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분은 우정사업본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우편환 요금」 고시 개정안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5-00호

우편환법 제9조(요금)관련 우편환 요금(제2021-3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환 요금

국 내 환					
통 상 환		온 라 인 환		경조금배달서비스	
송 금 액	요금	송 금 액	요금	송 금 액	요금
3만원 이하	500원				
5만원 이하	1,000원				
10만원 이하	1,500원	10만원 이하	2,500원	10만원 이하	3,000원
100만원 이하	2,500원	100만원 이하	3,500원	100만원 이하	4,000원
100만원 초과	3,500원	100만원 초과	4,500원	100만원 초과	5,000원

특 수 취 급			
구 분	수 수 료	구 분	수 수 료
○온라인환 현금 배달료 (경조금배달서비스 포함)	2,000원 + 현금배달봉투대금	○지급사실조사료	1,420원
		○지급정지료	500원
○경조금배달서비스 - 송금인 연기료	80원	○지급필통지료 - 송금청구시	500원
		- 송금청구후	1,000원
○증서송달료 - 보통등기우편	2,830원		
- 익일특급	3,830원	○기재사항정정청구료	500원

※ 국제환: 2021. 6. 7. 이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